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1411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23 선고 2014가단45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종회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 선고 2017. 1. 1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23. 선고 2014가단45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6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 내지 11행 기재 "을 제16호증의 기재 내용이나, 위 각 확인서의 형식이 다소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 종종 측에서 AD 등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이상, 최소한 피고 측에서는 AD 등의 'X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정도는 반증으로 제출하여야 원고 종종 측 증거의 신빙성을 다룰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을 제16,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 "1961년경"을 "1959년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2, 13행 "증인 X, AG, W" 다음에 "당심 증인 AH"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 "AH 등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등이 있으나, 이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원고 종종 측 사람들의 간단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높이 부여하기 어렵다."를 "AH 등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당심 증인 AH의 증언 등이 있으나, 이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원고 종종 측 사람들의 간단한 사실확인서 또는 증언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높이 부여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권준범

판사성기준